

農產物政策價格 引上이 農民의 農地稅負擔에 미치는 影響

—米穀 收買價格과 高추 基準價格을 중심으로—

金 基 成

責任研究員, 農業構造研究室

- I. 序 言
- II. 農地稅制의 主要 問題點과 農地稅의 伸張推移
- III. 農產物價格 引上이 農民의 農地稅 負擔에 미치는 影響
- IV. 結 言

1.5% (78, 79년), 農家의 租稅公課金중 차지하는 比率은 56~63% (1979, 78년) 등의 높은 水準이다. 이는 農地稅가 農家의 所得과 支出의 兩側面에서, 그리고 地方財政과 農家支出이라는 兩側面에서 모두 높은 比重과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1. 序 言

農地稅는 그것을 財政收入源의 主要 一部로 받아들이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立場에서 보면 「郡」單位 基準으로 一般會計豫算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9.3~11.3% (1979, 78년)水準이고, 「郡」自體收入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30~34% (1979, 78년), 그리고 「郡」의 地方稅收入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53~62% (1979, 78) 등으로서 地方自治團體(특히 郡單位)의 自體收入源의 大宗이요, 地方財政上 중요한 位置에 있다. 한편, 農地稅를 年間 總所得 중에서 부담하게 되는 支出의 일부로 보는 擔稅者인 農民의 立場에서는 農地稅는 農家所得 對比 1.47~1.70% (1978, 79년)水準으로 계속 增加傾向이고, 農家의 家計費에 비하면

위의 사실에 비추어 農地稅의 賦課와 徵收에 관련된 問題는 결국 政策의 優先順位내지 높은 價値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收入 側面에 둘 것인가, 農地稅負擔의 合理化를 통한 農家의 所得 補填내지 家計安定의 側面에 둘 것인가의 問題로 귀착되며, 현재 農民의 輿論¹과 現行農地稅制의 不合理性 등을 감안할 때, 地方政府는 그 財政의 收入源을 農地稅 이외의 手段, 예컨대 기타 稅收, 稅外收入, 地方交付金 增大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農地稅에 대해서는 일단 그 負擔의 不衡平性, 稅率構造의 不合理性 등 懸案問題의 解消를 위한 제도적인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本稿는 이와 같이 農民의 稅負擔 合理化를 추구하는 稅制運營에 優先的 價値를 둔다는 前提

表 1 地方財政의 側面에서 本 農地稅規模 伸張推移

	1965	1971	1975	1979	79/65	79/71	79/75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倍	倍	%
農地稅總規模 (A)	4,023.6	5,472.5	20,983.2	53,819.7	13.4	9.8	256.5
甲類農地稅 (B)	3,782.4	4,684.4	17,524.9	43,372.3	11.5	9.3	247.5
乙類農地稅 (C)	241.2	788.1	3,458.3	10,447.4	43.3	13.3	302.1
農家販賣價格指數	19.7	45.7	100.0	209.1	—	—	—
B/A (%)	94.0	85.6	83.5	80.6	—	—	—

資料：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66~1980.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0.

表 2 農家戶當農地稅 伸張推移

	1965	1971	1975	1979	79/65	79/71	79/75
	원	원	원	원	倍	倍	%
· 戶當農地稅額							
全體農家基準	1,605	2,205	8,820	24,896	15.5	11.3	282.3
耕種農家基準	1,625	2,351	9,299	26,096	16.1	11.1	280.6
· 甲類農地稅(米作農家기준)	1,993	2,613	9,873	26,144	13.1	10.0	264.8
· 乙類 " (田作, 菜蔬, 果樹, 特作農家기준)	417	1,472	6,757	25,892	62.1	17.6	383.2
· 農家販賣價格指數	19.7	45.7	100.0	209.1	—	—	—

資料：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66~1980. 農水産部,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 1966~1980.

下에 현행 農地稅制가 지닌 問題點 중 특히 政策的으로 조정하는 農産物價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農民의 稅負擔을 가중시키는 價格要因을 最少化할 수 있는 制度的 改善方向과 그 論據를 論해 보고자 한 것이다.

II. 農地稅制의 主要 問題點과 農地稅의 伸張推移

1. 農産物價格要因의 影響을 받는 農地稅制 上의 問題點

現在까지 分析導出된 農地稅制上의 主要 問題點² 중 農産物의 價格要因의 影響을 크게 받는 것은 다음 4가지로 摘要될 수 있다. 즉 1)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이 絕對的, 相對的으로 낮은 점³ (甲乙類農地稅 共通), 2) 納付形態(方法)는 物納制인데도 基礎控除는 金額單位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實質控除額⁴의 減少에 따르는 稅負擔增加傾向(甲類農地稅), 3) 課標間隔 (bracket)이

綜合所得稅보다 현저히 低고 그 結果로 中農水準 農家의 負擔이 상대적으로 높은 傾向(甲乙類 共通), 4) 稅額算出에 적용하는 基準時價를 農家販賣價格보다 높거나, 地域間 및 品種間 價格差를 반영치 못하고 결정하는 점(乙類農地稅) 등이다.

2. 農地稅의 規模와 擔稅率의 伸張推移

農地稅의 全國 總規模는 賦課額 基準으로 1965年의 4,023.6百萬元에서 1975년에는 20,983.2百萬元, 1979년에는 53,819.7百萬元으로 증가되어, 79/65年比가 13.4배, 79/75年比는 256.5%水準으로 신장되었다. 甲類 및 乙類農地稅別로 보면, 甲類農地稅가 1979년에 43,372.3百萬元으로 1965年比 11.5배, 1971年比 9.3배 및 1975年比 247.5%의 伸張率을 보였고, 乙類農地稅는 1979년에 10,447.4百萬元으로 1965年比 43.3배 1971年比 13.3배 및 1975年比 302.1%의 伸張率을 보임으로써 後者の 伸張率이 더 높았다(表 1).

한편 農地稅의 伸張推移를 擔稅者인 農民次元

表 3 農家家口員 1人當 農地稅負擔 推移

	1965	1971	1975	1979	79/65	79/71	79/75
· 1人當農地稅計							
· 耕種農家家口員	258원	398원	1,661원	5,219원	20.2倍	13.1倍	314.2%
· 全體農家家口員	255	374	1,575	4,979	19.5	13.3	316.1
· 甲類農地稅							
· 米作農家家口員	316	443	1,763	5,229	16.5	11.8	296.6
· 甲類稅納付 //	337	1,148	4,103	10,134	30.1	8.8	247.0
· 乙類農地稅							
· 田作, 菜蔬, 果樹, 特作農家家口員	66	249	1,207	5,178	78.5	20.8	429.0
· 乙類稅納付 //	332	635	1,445	5,255	15.8	8.3	363.7

資料：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66~1980.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 1966~1980.

에서 보면,

(1) 全國 總農家 戶當平均으로는 1979년에 24,896원으로서 1965年比 15.5배, 1975年比 282.3%의 水準으로 伸張되었고,

(2) 全國 耕種農家 戶當平均으로는 1979년에 26,094원으로서 1965年比 16.1배, 1975年比 280.6% 水準으로 伸張하였는데 그중 ①甲類農地稅는 米作農家 戶當平均으로 1979년에 26,143원을 記錄, 1965年比 13.1배, 1975年比 265%의 伸張率을 보였으며, ②乙類農地稅는 田作, 菜蔬, 果樹 및 特作農家 戶當平均으로 1979년에 25,892원에 달함으로써 1971年比 17.6배, 1979年比 383%의 伸張率을 보였다<表 2>.

(3) 農家家口員 1人當 農地稅 伸張推移는 ① 甲類農地稅가 米作農家 基準으로 家口員 1인당 1979년 및 5,229원으로 1965年比 16.5배, 1975年比 297% 水準으로 伸張하였고, ②乙類農地稅는 田作, 菜蔬, 果樹 및 特作農家の 家口員 1인당 1979년에 5,178원으로 1965年比 26.3배, 1975年比 429% 水準까지 伸張하였다. ③甲乙類農地稅를 合한 全體農地稅의 全國農家 家口員 1인당 農地稅 負擔額은 1979년에 4,979원으로 1975年比 316%로 伸張하였고, 이를 耕種農家 基準 家口員 1人當 農地稅 負擔額으로 보면 1979년에

5,219원으로 1975年比 314.2%의 伸張率을 보였다<表 3>. 대체로 農地稅의 伸張率은 1965년에 비해서는 全國 總規模로 13.4배, 農家戶當(耕種農家基準)規模로 16.1배, 農家家口員 1인당으로 20.2배(耕種農家 家口員 基準)의, 그리고 1975년에 비해서는 각각 256.5%, 280.6%, 314.2%의 伸張率을 보임으로써 全國 稅收額보다는 戶當擔稅額이, 그리고 戶當擔稅額보다는 家口員 1인당 擔稅額이 현저히 높은 比率로 伸張되었으며, 甲類 農地稅보다는 乙類農地稅가 더 높은 伸張率을 보였다.

한편 이 農地稅의 伸張率을 農家の 所得增加率 및 農家販賣價格指數 등과 비교해 보면,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農家戶當 農地稅 負擔額은 1975年比 280.1%伸張으로 1975年基準 農家 所得增加率255.2% (農業所得增加率 214.2%)나 農家販賣價格指數209.1% 등보다 현저히 빠른 (높은) 伸張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Ⅲ. 農産物價格 引上이 農民의 農地稅 負擔에 미치는 影響

本稿는 農産物價格 變化 중에서 米價引上에 의한 甲類農地稅 負擔增加 및 高추價格變動에 의한

表 4 農地稅・農家所得・農家販賣價格 變動推移

	1975	1977	1978	1979	79/75
農地稅計 ¹⁾ (戶當)	9,299원	16,385원	20,961원	26,096원	280.6%
甲類農地稅 ²⁾ (//)	9,873	17,534	21,629	26,144	264.8
乙類農地稅 ³⁾ (//)	6,757	12,054	18,051	25,892	383.2
農家所得(//)	872,933	1,432,809	1,884,194	2,227,483	255.2
農業所得(//)	714,800	1,036,100	1,355,700	1,531,300	214.2
農家販賣價格指數	100.0	144.6	188.5	209.1	209.1

1) 耕種農家基準

2) 米作農家基準

3) 準田作, 菜蔬, 果樹, 特作農家基準

資料: 前揭資料.

表 5 米穀政府收買價格推移

名目價格	單位: 원/精穀 80kg, %													
	1965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80/71	80/75
名目價格	3,150	7,000	8,750	9,888	11,377	15,760	19,500	23,200	26,000	30,000	36,600	45,750	552.9	234.6
(前年比增減)(%)	—	35.9	25.0	13.0	15.1	38.5	23.7	19.0	12.1	15.4	22.0	25.0	—	—
實質價格*	12,550	15,873	17,570	17,532	18,469	19,481	19,500	18,575	17,962	15,781	16,929	16,976	96.6%	87.1%
(前年比增減)(%)	—	19.6	10.7	△0.2	5.3	5.5	0.001	△4.7	△3.3	△12.1	+7.3	+2.8	—	—
農家購入價格指數	25.1	44.1	49.8	56.4	61.6	80.7	100.0	124.9	146.2	190.1	216.2	269.5	—	—

* 實質米價는 名目米價를 農家購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한 것.

資料: 農水產部.

乙類農地稅 負擔變化의 影響만을 分析範圍로 한다.

1. 米價引上과 甲類農地稅

지난 10여년 동안 高米價政策에 의하여 米穀의 政府收買價格은 적어도 名目上으로는 매년 12~38% 水準으로(1970~1980년) 계속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實質米價는 1975년 價格(精穀 80kg當 19,500원) 基準으로 1980년에 16,976원/80kg으로서 1971년(17,570원)比 3.4%, 1975年比 12.9%씩 하락하여(表 5) 政府가 米穀生産을 장려하고 農家所得을 높여 주기 위하여 실시한 그와 같은 米價引上政策에도 불구하고 米價引上 그 자체를 통해서 農地稅負擔을 증가시켰으므로써 오히려 農家の 可處分所得을 감소시키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현행 農地稅制下에서 米價引上이 農地稅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米價引上→米穀粗收入增大→甲類農地稅 增加」의 과정을 통해서, 둘째, 「米價引上→實質基礎控除下落 또는 課標間隔縮

少)→甲類農地稅增加」의 과정을 통하여 農民의 稅負擔을 늘리고, 따라서 米價引上은 그로 인한 農地稅負擔 增加分 만큼 그 效果가 감소한다.

이를 甲類農地稅의 稅額算出公式(圖 1)을 통해서 고찰하면, 甲類農地稅에 있어서 稅額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價格要因은 1차적으로 米穀의 粗收入을 결정짓는 米價(政府收買價格)와 農地稅의 課標를 결정짓는 基礎控除인바, 兩者 모두 價格引上에 의하여 農地稅負擔을 증대시키는 要素이나, 前者는 農地稅에의 全般的인 影響을, 後者는 農地稅에의 部分的(制限的)인 影響(基礎控除를 物量으로 정할 경우 基礎控除物量 범위 내에서는 米價引上에 의한 稅負擔증가 效果가 배제되므로)을 미친다.

가. 米價引上의 全般的인 增稅效果

이는 基礎控除나 課標間隔 등이 모두 現行과 같이 現金額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米價引上에 의한 農地稅 增加效果를 의미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基礎控除額을 金額單位로 고정

圖 1 甲類農地稅 算式模型

$$T = r(Y \cdot A \cdot P_G - S_b)$$

$$T_1 = S \times \frac{6}{100}$$

$$T_2 = T_1 + (S - 15 \text{ 萬圓}) \times \frac{8}{100}$$

$$T_3 = T_1 + T_2 + (S - 30 \text{ 萬圓}) \times \frac{10}{100}$$

여기서
 S: 課標
 T: 稅額
 T₁: 課標가 15萬圓 미만일 때의 稅額
 T₂: 課標가 15萬圓 이상 30萬圓 이하일 때의 稅額
 T₃: 課標가 30萬圓을 超過할 때의 稅額
 r: 稅率(課標額이 많고 적음에 따라 6/100, 8/100, 10/100의 3계층이 있음).
 Y: 土地等級別 收穫量
 A: 栽培面積
 P_G: 政府收買價格(벼 2등급 價格基準)
 S_b: 基礎控除額(74萬圓; 1979, 1980, 1981년도)

府收買價格이 20~25% 인상되는 경우 農民이 자동적으로(稅率 등의 변경 없이) 더 부담케 되는 甲類農地稅 增加率은 23.4%~47.8%의 높은 수준이다.

나. 米價引上의 制限的 增稅效果

이는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를 物量單位로 정해 놓음으로써 實質控除에서는 변화가 없고(名目控除額은 米價引上率 만큼 인상되므로), 따라서 基礎控除額 範圍內에서는 米價引上의 增稅效果가 發生치 않아서 그만큼 農民의 農地稅 負擔增加의 素地가 감소되는 現象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1979年 米價基準으로 基礎控除를 33.2噸 (=79年 價格基準으로 740,000圓: 現行 金額單位

表 6 農地稅에 대한 米價引上 效果(I)¹⁾

米價引上率	課標 ²⁾ 100萬圓	150萬圓	200萬圓	250萬圓	300萬圓	400萬圓	500萬圓
基準時 價(79)(t)	91,000圓	141,000	191,000	241,000	291,000	391,000	491,000
20% 引上 (t+1)	125,800	185,800	245,800	305,800	365,800	485,800	605,800
25% (t+2)	134,500	197,000	259,500	322,000	384,500	509,500	634,500
(t+1)/t	138.2%	131.8	128.7	126.9	125.7	124.2	123.4
(t+2)/t	147.8%	139.7	135.9	133.6	132.1	130.3	129.2

1) 甲類農地稅基礎控除를 金額基準으로 정해 놓은 경우(現行: 79~80)

2) 課標=租收入-基礎控除 (740,000圓).

資料: 地方稅法중 農地稅關聯條項 參照.

해 놓은 현행 稅制下에서는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米價의 引上은 甲類農地稅의 實質控除 引下를 통하여 農民의 農地稅負擔을 크게 증가시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즉 米價가 20% 引上될 경우 課標 100萬圓(米穀租收入 174萬圓: 벼 78噸/54kg收穫)의 米作農家は 1979年 價格基準으로 125,800圓의 稅金을 부담케 됨으로써 38.2%의 稅負擔 增大를 초래하며, 25% 米價引上의 경우는 134,500圓의 稅金負擔에 47.8%의 增加를 초래하고 있다. <表 6>에 의하여 米價引上에 의한 稅負擔 增大效果를 집약하면, 年間 米穀租收入이 174~574萬圓(54kg 벼 78~258噸收穫) 範圍의 米作農家は 1979年 價格基準으로 政

基礎控除額 相當)로 정해 놓았다면 政府가 農民의 所得保障을 위하여 米價를 인상하더라도 이에 따라 名目上의 基礎控除額이 같은 比率로 인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米價引上에 의한 實質控除額 下落으로 초래되는 農地稅負擔 增加效果만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表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米價는 같은 比率로 인상하였어도 基礎控除를 物量으로 정해 놓으면 米價引上에 의한 農地稅負擔의 增加率은 基礎控除를 金額單位로 정해 놓은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예컨대 米價를 25% 인상할 경우 引上前 課標가 200萬~500萬圓의 米作農家は 基礎控除를 金額單位로 정할 때(現行)는 米價引上前에 비하여 35.9%~29.2%

表 7 農地稅에 대한 米價引上 效果(Ⅱ)^D

收獲量		78.2畝	100.6畝	123.1畝	145.6畝	168.0畝	212.9畝	257.9畝	
米價引上率									
基準時價(79)(t) (벼 畝當 22,260원)	課 標	1,000千원	1,500	2,000	2,500	3,000	4,000	5,000	
	粗 收 入	1,740千원	2,240	2,740	3,240	3,740	4,740	5,740	
20%引上時(t+1) (벼 畝當 26,710원)	稅 額 (a)	91千원	141	191	241	291	391	491	
	課 標 ²⁾	1,201千원	1,801	2,401	3,001	3,601	4,801	6,001	
25%引上時(t+2) (벼 畝當 27,830원)	粗 收 入	2,088千원	2,688	3,288	3,888	4,488	5,688	6,888	
	稅 額 (b)	111.1千원	171.1	231.1	291.1	351.1	471.1	591.1	
b/a	課 標 ³⁾	1,251千원	1,876	2,501	3,126	3,751	5,001	6,251	
	粗 收 入	2,715千원	2,800	3,425	4,050	4,675	5,925	7,175	
c/a	稅 額 (c)	116.1千원	178.6	241.1	303.6	366.1	491.1	616.1	
			122.1%	121.3%	121.0%	120.8%	120.7%	120.5%	120.4%
			127.6	126.7	126.2	126.0	125.8	125.6	125.5

1) 甲類農地稅 基礎控除를 物量單位로 定해 놓은 경우(79年의 74萬원→33.2畝).

2) 收獲量×20% 引上된 收買價格.

3) 收獲量×25% 引上된 收買價格.

資料: 地方稅法 중 農地稅關聯條項 參照.

圖 2 乙類農地稅 算式模型(고추 農家의 예)

$$T = r(Y \cdot A \cdot P \cdot I_R - S_b)$$

$$T_1 = S \times \frac{15}{100}$$

$$T_2 = T_1 + (S - 15\text{만원}) \times \frac{15}{100}$$

$$T_3 = T_1 + T_2 + (S - 30\text{만원}) \times \frac{20}{100}$$

여기서,

S: 課標

T: 稅額

T₁: 課標가 15만원 미만일 때의 稅額

T₂: 課標가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일 때의 稅額

T₃: 課標가 30만원을 초과할 때의 稅額

r: 稅率(課標額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100, 15/100, 20/100의 3계층이 있음)

Y: 坪當 收獲量(斤/坪)

A: 坪數

P: 斤當 價格(1980년 慶北 義城의 경우 斤當 2,000원이었음)

I_R: 所得率(45~46%; 1980년)

S_b: 基礎控除額(1期 11만원; 1979, 1980, 1981년)

의 追加負擔을 하게 되나, 그것을 物量單位로 定하면 3.7%~5.2%포인트가 낮은 25.5~26.2%의 追加負擔만을 하게 된다.

2. 高추價格 變動과 乙類農地稅 負擔

(圖 2)의 乙類農地稅算式에서 볼 수 있듯이 高추栽培 農家의 乙類農地稅負擔額은 當該年度

의 高추所得額과 基礎控除 및 稅率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高추價格 引上의 影響을 받을 要素는 所得額 決定의 主要因 중의 하나인 高추의 「基準價格」과 肥料代, 農藥代 및 勞賃 등이 主要變數인 經營費이다.

本稿는 乙類農地稅決定에 직접적 影響이 가장 크고 現稅制上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高추의 「基準價格」變動이 農地稅에 미치는 影響만을, 최근의 現地調查結果를 감안하여 要約分析해 본다.

(表 8)의 內容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現行 稅制下에서 乙類農地稅 稅額算出에 적용하는 高추의 基準時價(예컨대 斤當價格 등)가 10% 인상될 경우 高추栽培面積 200坪의 農家는 乙類農地稅額이 1980年 價格基準으로 3,720원에서 5,192원으로 39.6%의 追加負擔을 요하며, 栽培面積 1,000坪의 農家는 102,700원에서 117,420원으로 11.8%의 追加負擔을 하게 된다. 같은 理由로 栽培面積이 400~5,000坪 範圍內的 高추栽培農家는 高추의 基準時價를 10%만 인상할 경우라도 稅制上의 변경없이 自動的으로 乙類農地稅를 11~22%

表 8 高추價格變動에 의한 乙類農地稅 負擔 變化

栽 培 面 積	所 得 額* ()內는 10% 引上後 의 所得額		乙 類 農 地 稅		B/A (%)
			基準時價 적용時 (A)	價格 10% 引上時 (B)	
100坪	73,600	(80,960)	0	0	—
150	110,400	(121,440)	0	1,144	—
200	147,200	(161,920)	3,720	5,192	139.6
400	294,400	(323,840)	20,160	24,576	121.9
700	515,200	(566,720)	58,540	68,844	117.6
1,000	736,000	(809,600)	102,700	117,420	114.3
2,000	1,472,000	(1,619,200)	249,900	279,340	111.8
3,000	2,208,000	(2,428,800)	397,100	441,260	111.1
5,000	3,680,000	(4,048,000)	691,500	765,100	110.6

* 所得額은 坪當 高추收量 0.8斤, 斤當價格 2,000원 (80), 高추所得率 46% (80)을 適用하여 算出함. (慶北 義城의 例)
資料: 現地調查結果 參照. (1981년 5월)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

IV. 結 言

第Ⅱ章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農地稅制는 一部 改善을 요한다. 本稿는 최근 油價引上을 비롯한 주요 物價引上이 전반적인 家計負擔을 가중시키고 있는 現實 속에서 農家의 可處分所得과 직결되는 農地稅의 負擔에 있어서는 米穀 政府收買價格 및 高추基準價格의 引上이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미 前提한 바와 같이 단지 米價와 高추價格의 引上 效果만을 分析對象으로 한정하였지만 그것이 農民의 農地稅負擔에 미치는 影響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와 관련하여 그동안 政府가 農家의 所得補填, 食糧增產 등의 目的으로 政府關係部處間의 심한 見解差를 끈질기게 調整해 가면서 어렵게 실시 해 온 米穀의 政府收買價格 引上政策을 반성치 않을 수 없다. 政府는 매년 이 米穀의 收買價格을 인상해 왔으나 그때마다 그 引上率(또는 引上幅)의 낮고 높음(좁고 넓음)의 시비가 뒤따랐다. 그러나 그 是와 非의 어느 쪽이든 米價引上의 裏面에 도사리

고 있는 「米價引上에 따른 農地稅 負擔增加」問題 즉 農地稅 負擔增加分 만큼 감소하는 米價引上 效果가 어느 정도나 고려되었는지 疑問이다(甲類稅). 한편 乙類農地稅의 課標算定에 적용키 위하여 결정하는 課稅對象作物(예: 高추, 마늘, 사과 등)의 「基準價格」의 높고 낮음의 是非도 現農地稅制 運營上 끊이지 않는 爭點 中の 하나였다. 第Ⅲ章에서의 分析結果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基準價格을 10%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高추 200坪 栽培農家は 40%, 400坪 栽培農家は 22%, 그리고 1,000坪을 栽培하는 農家は 14% 등의 農地稅를 추가로 더 부담케 된다는 점에서 乙類農地稅 對象作物의 課標決定用 基準價格決定의 適正化는 특히 擔稅者인 農民의 立場에서 볼 때 더욱 절실한 事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비록 그 範圍를 米價上昇(收買價格 引上)과 高추價格 上昇(基準價格 引上) 效果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結果만으로도 農民의 稅負擔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볼 때 農產物 價格引上이 農地稅에 미치는 影響은 상당히 큰 것임에 틀림없다. 現實의 으로 政府의 여러 가지 政策의 理由에서 米價引上은 불가피하며, 이 米價引上이 계속되는 한

그에 의한 農地稅 負擔增加의 可能性은 完全排除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할 때 價格要因에 의한 農地稅制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 方案으로는 ①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는 物量單位로 설정한다(米價連動制). ② 乙類農地稅의 課標決定에 적용하는 作物別 基準價格은 賦課時點에 있어서의 農家販賣價格을 하회하는 水準으로 결정한다. ③ 納稅方法에 있어서는 現行의 物納制(甲類)와 金納制(乙類)로 되어있는 것을 農民의 원하는 바에 따라 金納制(甲類)를 自由로 택할 수 있는 二元制로 전환한다. ④ 農地稅의 課標間隔(幅)도 現行의 金額單位制(예: 15萬원 이하, 15萬원 초과 30萬원까지, 30萬원 초과하는 금액 등)에서 物量單位制(예: 벼 33.2畝/54kg, 고추 75斤 등)로 전환한다(米價 및 고추 基準價格連動化). ⑤ 甲類農地稅의 課標는 米價 이외에도 인플레이 影響을 받을 素地가 많은(肥料代, 農藥代, 農機械代, 勞賃 등의 引上에 의하여) 粗收入으로 정하고 있는 現行制度를 所得金額課標制로 전환한다 등으로 集約 提示할 수 있다.

註1. 1980년 10월에 실시한 郵便調査 결과 ① 農地稅를 납부하는 1802戶의 應答農家 중 農地稅負擔이 과중하다는 不滿을 표시한 農家가 484戶로서 26.9%였고, 農地稅의 賦課가 不公平하다는 不滿을 표시한 農家가 1,150명으로 63.8%에 달하였으며 ② 甲類農地稅의 納付方法을 金納 또는 物納 중 任意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農家가 69.1%였으며, 金納制만으로 하자는 農家가 9.4%, 物納制로만 하기를 원하는 農家는 19.9%였음.

2. 現農地稅制가 지니고 있는 주요 問題點은 1), 2), 3), 4) 項 이외에도 5) 農地稅課稅對象作物(예컨대 벼)의 單位面積 當收穫量이 매년(77년 이후) 감소함에 반하여 同一農地에 부과되는 農地稅는 <別表 1>과 같은 農地等級의 引上 등에 의하여 課標를 계속 인상해온 甲類稅

<別表 1>

	1977	1978	1979	79/77
平均課標	벼 130kg/100평	140kg	150kg	
쌀 平均段收	쌀 494kg/10a	474kg	453kg	91.7%
農地平均等級*	23등급	24등급	25등급	—

* 畝 100坪當 平均收穫量을 基準으로 하여 內務部수으로 설정한 農地의 筆地別 平均等級.

- 6) 中小農水準(米穀粗收入 374萬원 이하, 乙類作物所得 300萬원 이하)의 課標에 적용하는 農地稅의 稅率이 同一所得水準의 綜合所得稅率보다 현저히 높은 점. 7) 課標決定을 위한 作況調査 方法의 미흡으로 作況調査에 調査者의 主觀介入의 可能性이 큰 점 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農地稅의 基礎控除金額(74萬원)은 첫째 農家の 平均家計費의 44.5%(79年)에 불과하며(都市勤勞者의 綜合所得稅基礎控除額은 87.9~123.1%(79) 水準인). 둘째, 現行 綜合所得稅의 基礎控除額(186萬 원~248萬 원)에 비하여 29.8~39.8% 水準에 불과하다.
4. 基礎控除額의 實質價額을 의미함. 예컨대 벼 54kg 1畝當 17,890원(2등)이던 1979년도의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은 名目上으로 74萬원이었는바 그것은 그당시 物量으로 41.4畝이었으나 1980年(22,260원/54kg)에는 같은 74萬원이라도 物量으로 33.2畝로서 1년 사이에 基礎控除額은 實質價額으로 20. %가 감소한 셈이다.

參考文獻 및 資料

經濟科學審議會議, “中長期稅制改編에 관한 研究”, 1980.
 金學成, “糧特赤字의 現況과 經濟效果”, 1980.
 韓國稅務經營社, 「改正稅法要解」, 1980.
 金基成, “農民의 農地稅負擔現況과 問題點”, 1980.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66~1980.
 // 「地方稅政年鑑」, 1966~1980.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9, 1980.
 // 「都市家計年報」, 1979.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1980.
 // 「農產物 生産費調査結果報告」, 1980.
 //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79, 1980.
 財務部, 「韓國稅制史」, 1977.
 法令篇纂委員會, 「大韓民國現行法令集」 ⑧, ⑨卷.